

● 중소기업부 공고 제2026-615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요구 미이행에 따라 공표 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를 배달 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표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개선요구 미이행 사업자 명단 공표 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의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30. ~ 2026. 11. 13.
3. 공시송달 내용

|                     |                                                                                                     |
|---------------------|-----------------------------------------------------------------------------------------------------|
| 예정된 처분의<br>제목       | 2024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 개선요구 미이행 사업자 명단 공표                                                            |
| 공표<br>대상자           | 기업명 나경종합건설(주) (사업자번호 : 355-81-01214)                                                                |
|                     | 주 소 인천시 부평구 부평4동 408-10번지 나경빌딩 1101호                                                                |
| 처분의<br>원인이 되는<br>사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2조 위반 사항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라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            |
| 처분하고자<br>하는 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에 귀사의 명칭 및 대표자,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소재지, 개선요구 미이행 내용 등을 공표                              |
| 법적근거 및<br>조문내용      | 법 제27조 ③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위탁기업이 개선요구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

| 의견 제출 기관 |                                      |         |                     |
|----------|--------------------------------------|---------|---------------------|
| 부 서 명    | 불공정거래개선과                             | 담 당 자   | 권민지 주무관             |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         |                     |
| 전 화 번 호  | 044-204-7915                         | 전자우편주소  | kwonmj1245@korea.kr |
| 팩 스 번 호  | 044-204-7949                         | 의견제출 기한 | 2026년 11월 13일(금)    |

#### 4. 유 의 사 항

가.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위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양식) 1부.

[붙임] 의견제출서(양식)

##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
|-------|----|------|
| 의견제출인 | 성명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
| 의견제출<br>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
|            | 당사자                            | 성명(명칭)   |
|            |                                | 주소       |
|            |                                | (전화번호: ) |
|            | 의견                             |          |
| 기타         |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